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1318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1. 21 선고 2024나202131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504081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훈희, 조용균, 김광미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동북아

담당변호사 권우상

변호사 조훈희

피고, 피항소인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우

담당변호사 박성훈, 정우진

변론 종결 2024. 11. 7.

판결 선고 2024. 11.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5040812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5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9.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이 유

1.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청구를 하였다가 당시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5면 제15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1차 계약이 효력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이 사건 2차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금 4억 원은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약정한 매매대금의 10%를 초과하는 점, 피고 측의 계약 위반사항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2차 계약에서 이 사건 1차 계약의 특약사항을 삭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계약금 4억 원을 위약금으로 전부 몰취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상당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2차 계약의 체결 및 해제 경위, 이 사건 조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금 4억 원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여겨지므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3.나.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기재(제1심판결 제9면 제17행부터 제11면 제18행까지)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특히,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계약 당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전체 주식양수대금 2,438,000,000원의 약 16%에 해당하는 4억 원으로 정해진 이유는, 이 사건 조합이 피고로부터 E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1차계약을 체결하는 날에 N 투자조합도 피고로부터 E의 기명식 보통주식 50만 주를 주당 4,450원, 총 2,250,000,000원에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N 투자조합이 계약금을 납부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가 N 투자조합에 위 주식 매도를 꺼리자 이 사건 조합과 N 투자조합이 피고에게 피고가 매각하는 주식의 총 매매대금 4,583,500,000원(= 이 사건 1차 계약의 매매대금 2,358,500,000원 + N 투자조합 매매대금 2,250,000,000원) 중 10%에 상당하는 계약금 458,350,000원을 N 투자조합이 58,350,000원, 이 사건 조합이 400,000,000원으로 나누어 부담하겠다고 한 제안 때문이었으며, 이후 N 투자조합과의 매매계약도 이 사건 2차 계약과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N 투자조합 역시 주식매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매매계약을 위반하였으나 손해배상 예정액인 계약금이 위와 같이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 까닭에 해당 금액만 몰취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더욱 이 사건 각 계약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현저하게 과다하게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차문호

판사오영준

판사한규현

1) 원고는 2024. 8.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범위를 종전 청구취지 금액에서 이와 같이 감축하였다.